

『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1월 12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시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체육회(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법 개정으로 2015.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예정)에서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 주요내용

가. 시립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인천광역시체육회,인천

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를 규정함(안 제4조제2호)

나. 시립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각 체육회,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를 규정함(안 제4조제5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2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— mpfive705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각종” 을 “인천광역시체육회,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각 체육회,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. 1. (생략) 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<u>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</u> 3. · 4. (생략) 5. <u>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</u> 6. ~ 8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인천광역시 체육회,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--</u> 3. ·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각 체육회,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</u> 6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